

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다크 투어  
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2 월 29 일

여 수 시 장

2023.12.29



여수시 조례 제2032호

붙임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

##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순사건 등 여수시의 어두운 역사가 지닌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교훈적인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다크 투어리즘” 이란 여수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에서 일어난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교훈 여행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다크 투어리즘 육성의 지원방향 및 목표
  2.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화 연구
  3.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방안
  4. 다크 투어리즘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
  5.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
 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 사업)**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지원
2.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
3.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6조(재정 지원)**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7조(위원회의 설치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· 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· 시행
2.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
3.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**제8조(위원회의 구성 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여수시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  1.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
  2. 학계, 언론계, 시민단체,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
 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광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.
-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- 제9조(위원회 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 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.
  -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  -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- ⑦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0조(해설사 배치)**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1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